

문서번호	서울장학재단-356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6. 6. 22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제 호

담 당	부 장	사무국장	이사장
김동규	최준근	대결 최준근	문미란
협조자			

I·SEOUL·U



2016년 하반기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영 계획

2016. 6.

서 울 장 학 재 단

2016년 하반기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운영 계획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·운영을 통한 재단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, 재단 운영의 신뢰성 강화 등 체계적인 재단의 이사회 운영

I 추진 근거

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(임원)
- 기관별 설립·운영 조례 및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(내규)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공문-4855호('16.5.3,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알림)
- 서울장학재단 공문 -273호('16.5.11, 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제출)

구성현황

- 이사장(비상임) : 문미란 이사장
- 비상임 이사 : 10명(당연직 이사 2명, 시 평생정책교육관 ,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)
- 비상임 감사 : 2명(당연직 감사 1명, 외부 비상임감사 1명)

이사회 운영 실적('13~'15)

구분	개최 횟수	처리안건
2013	3	14
2014	4	16
2015	5	21
계	12	51
연평균	4	17

Ⅱ 운영 계획

운영 기준

- 이사회 운영계획 수립 · 확정 후 해당 계획에 근거한 이사회 개최

운영 방향

-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역할 증대
- 경영이슈 사항 특별보고 등 재단 경영 전반 사항 보고 및 조언
- 이사회 전문성 활용 극대화
- 이사회 개최시기 정례화로 참석률 제고

운영 방법

- 매 회계연도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‘00년도 이사회’운영계획’을 보고안건으로 제출

※ ‘16년 이사회는 하반기 이사회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

- 운영계획 보고 시 당해 임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운영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음

- 운영계획 확정 시 해당 계획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 ·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*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만 예외 적용 가능

Ⅲ ‘16년 하반기 이사회 추진 일정

구분	개최	주요안건	비고
임시	7월 초	- 현안업무 보고 및 규정 개정 등	
임시	9월 말	- 현안업무 보고 및 규정 개정 등	
정기	11월 말	- 현안업무 보고 및 규정 개정 등 - ‘17년도 사업 수립 및 예산안 의결 등	

※ 개최월 넷째주 수요일(원칙)로 정례화, 필요시 일정 조정(7월 5일, 25회 임시 이사회 제외)